

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현대차그룹과함께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20.11.24.

3. 주요 변경 사항 :

- 펀드 명칭 변경
(키움현대차그룹과함께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→키움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)
- 환매수수료 삭제
- Class C-P2(퇴직연금), Class C-P2e(퇴직연금), Class S-P, Class S-P2(퇴직연금) 신설

4. 변경사항

[집합투자규약]
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집합투자기구 명칭 | 키움 <u>현대차 그룹과 함께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| 키움 <u>차세대모빌리티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|
| 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 | <p>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키움 <u>현대차 그룹과 함께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"이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1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키움 <u>차세대모빌리티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"이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Class C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: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u></p> <p><u>15. Class C-P2e(퇴직연금) 수익증권: 판매 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u></p> <p><u>16. Class S-P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(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)</u></p> <p><u>17. Class S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u></p> |
| | 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 | 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| <p>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키움 현대차그룹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</p> | <p>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키움 차세대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</p> |
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|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~1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|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~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Class C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</p> <p>15. Class C-P2e(퇴직연금) 수익증권</p> <p>16. Class S-P 수익증권</p> <p>17. Class S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</p> |
| 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|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키움 현대차그룹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</p> |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키움 차세대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</p> |
| <p>제39조(투자신탁보수)</p> |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|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Class C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8.2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</p> <p>15. Class C-P2e(퇴직연금)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4.1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<u>16. Class S-P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0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2.7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<u>17. Class S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7.0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2.6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2</u></p> |
| <p>제40조(판매수수료)</p> |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~3. (생략)</p> <p>4.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2 수익증권, Class C3 수익증권, Class C4 수익증권, Class C-e 수익증권, Class C-F 수익증권, Class C-W 수익증권, Class S 수익증권, 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: 없음</p> |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2 수익증권, Class C3 수익증권, Class C4 수익증권, Class C-e 수익증권, Class C-F 수익증권, Class C-W 수익증권, Class S 수익증권, 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, <u>Class C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, Class C-P2e(퇴직연금) 수익증권, Class S-P 수익증권, Class S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: 없음</p> |
| <p>제41조(환매수수료)</p> | <p><u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<u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Class A1 수익증권, Class A-e 수익증권,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2 수익증권, Class C3 수익증권, Class C4 수익증권, Class C-e 수익증권, Class C-F 수익증권, Class C-W 수익증권, Class S 수익증권, Class AG 수익증권</u></p> | <p><u><삭제></u>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<p>가~나. (생략)</p> <p>2. 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: 없음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 (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| |
| 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|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 (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으며, 이 신탁계약과 수익증권저축약관(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을 우선한다.</p> |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 (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 및 Class 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으며, 이 신탁계약과 수익증권저축약관(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 및 Class 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)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을 우선한다.</p> |
| 부칙 | <신설> |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|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---|--|--|
| 표지 | | |
| 집합투자기구 명칭 | 키움 <u>현대차 그룹과 함께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| 키움 <u>차세대 모빌리티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|
|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 |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| <p>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2(퇴직연금))</u>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</u>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</u>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2(퇴직연금))</u></p> |
| 요약정보 | | |
| 집합투자기구 명칭 | 키움 <u>현대차 그룹과 함께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| 키움 <u>차세대 모빌리티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|
|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|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 <u>현대차 그룹 플러스</u>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. |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 <u>차세대 모빌리티</u>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. |
| 운용전문인력 | |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|
| 주요투자위험 | -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: 이 투자신 | -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: 이 투자신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| <p>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<u>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.</u></p> | <p>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|
| 환매수수료 | <p>· <u>Class A1, C1, C2, C3, C4, C-e, C-F, C-W, A-e, S, AG:</u> <u>-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</u> <u>-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%</u> · <u>Class C-P, C-Pe: 해당사항 없음</u></p> | 해당사항 없음 |
|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| <신설> | - <u>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 |
| 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| | |
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<p>키움 <u>현대차 그룹과 함께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| <p>키움 <u>차세대 모빌리티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2(퇴직연금))</u>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</u>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</u>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2(퇴직연금))</u></p>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
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<p>키움 <u>현대차 그룹과 함께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| <p>키움 <u>차세대 모빌리티</u>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2(퇴직연금))</u>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</u>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</u></p> <p>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2(퇴직연금))</u></p>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<p>- 펀드 명칭 변경(키움현대차그룹과함께 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)</p> <p>→키움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)</p> | <p>- 펀드 명칭 변경(키움현대차그룹과함께 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)</p> <p>→키움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)</p> |

| | | |
|---|--|---|
| | - Class C-P2(퇴직연금), Class C-P2e(퇴직연금). Class S-P, Class S-P2(퇴직연금) 신설 | - 환매수수료 삭제 - Class C-P2(퇴직연금), Class C-P2e(퇴직연금). Class S-P, Class S-P2(퇴직연금) 신설 |
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) 운용전문인력 | - |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)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| 키움 현대차 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키움 현대차 그룹과 함께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|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2(퇴직연금))</u> 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</u> 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</u> <u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2(퇴직연금))</u>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) 종류형 구조 | <u><신설></u> | - <u>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 |
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3) 모자형 구조 | 키움 현대차 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|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|
|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| -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 현대차그룹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. | -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.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) 투자대상 ※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| 키움 현대차 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|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|
|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)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. 투자전략 | ①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 현대차그룹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. | ①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. |
|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[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| A. 키움 현대차 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 및 국내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국내 | A.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 및 국내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국내 |

| | | |
|---|--|---|
| | <p>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 이상을 투자하고, 국내 채권, 집합투자증권, 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를 투자합니다.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현대차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주식인 현대차그룹주에 투자할 예정 <u>입니다.</u></p> | <p>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 이상을 투자하고, 국내 채권, 집합투자증권, 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를 투자합니다.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현대차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주식인 현대차그룹주에 투자할 예정 <u>이며, 그 외 비중은 수소차, 전기차, 자율주행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를 통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초과성과를 추구할 예정입니다.</u></p> |
|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1) 일반위험</p> | <p>-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<u>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.</u></p> | <p>-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|
| <p>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 1) 매입 나. 종류별 가입자격</p> |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<u>-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2(퇴직연금)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u> <u>-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: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</u> <u>-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(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)</u> <u>-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2(퇴직연금)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</u></p> |

| | | |
|--|--|--|
| | | 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|
| 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 2) 환매 다. 환매수수료 | Class A1 수익증권, Class A-e 수익증권,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2 수익증권, Class C3 수익증권, Class C4 수익증권, Class C-e 수익증권, Class C-F 수익증권, Class C-W 수익증권, Class S 수익증권, Class AG 수익증권: -3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 -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30% 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e 수익증권: 없음 |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[변경전1] | [변경후1]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다.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2) 과세 | [변경전2] | [변경후2] |
| 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| |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)운용자산규모 | |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|

[간이투자설명서]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|--|--|
| 요약정보 | | |
| 집합투자기구 명칭 | 키움 현대차 그룹과 함께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|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|
|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|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 현대차 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. |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'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'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. |
| 운용전문인력 | |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|
| 주요투자위험 | -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| -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|

| | | |
|------------|---|--|
| | <u>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.</u> | |
| 환매수수료 | · <u>Class A1, C1, C2, C3, C4, C-e, C-F, C-W, A-e, S, AG:</u> -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 -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% · <u>Class C-P, C-Pe: 해당사항 없음</u> | <u>해당사항 없음</u> |
|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| <u><신설></u> | - <u>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 |

[변경전1]

1)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| 클래스 (종류) | 가입자격 | 구분 | 부과비율 (또는 부과금액) | 부과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 (A1) | 가입제한 없음 (선취판매수수료 징구) | 선취판매수수료 | 납입금액의 1.0% 이내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<u>3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1) | 가입제한 없음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<u>3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2) | Class C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<u>3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3) | Class C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<u>3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4) | Class C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<u>3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 (C-e) |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<u>3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 | 주 4) 참조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|-----|
| 오프라인-기관 (C-F)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랩 (C-W) |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 | 환매시 |
| 수수료선취- 온라인 (A-e) |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 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(선취판매수수료 징구) | 선취판매수수료 | 납입금액의 0.5% 이내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 | 환매시 |
| 수수료후취- 온라인슈퍼 (S)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종개업 인가를 받은 회 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 외합니다.)가 개설한 온라 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(후취판매수수료 징구)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 이 내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 오프라인-개인 연금 (C-P) |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(판 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)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수수료선취-오프 라인-무권유 저비용 (AG) |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(선취판매수수료 징구) | 선취판매수수료 | 납입금액의 0.75% 이내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-개인연 금 (C-Pe) |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 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(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 는 수익증권)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
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| 클래스 | 지급비율 (연간, %)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| 집합 투자 업자 보수 | 판매 회사 보수 | 신탁 업자 보수 |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 수 | 총보수 | 동종 유형 총보수 | 기타 비용 | 총보수 · 비용 | 합성 총보 수 · 비용 (피투자 집 합투자기구 보수 포함) | 증권 거래 비용 |
| 수수료선취-오프 라인 (A1) | 0.7000 | 0.9800 | 0.0300 | 0.0200 | 1.7300 | 1.3700 | 0.0049 | 1.7349 | 1.7349 | 0.2115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 라인-보수체감 (C1) | 0.7000 | 1.5000 | 0.0300 | 0.0200 | 2.2500 | 1.5800 | 0.0032 | 2.2532 | 2.2532 | 0.2562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 라인-보수체감 (C2) | 0.7000 | 1.3500 | 0.0300 | 0.0200 | 2.1000 | 1.5800 | 0.0000 | 2.1000 | 2.1000 | 0.2130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 라인-보수체감 (C3) | 0.7000 | 0.9900 | 0.0300 | 0.0200 | 1.7400 | 1.5800 | 0.0000 | 1.7400 | 1.7400 | 0.2233 |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4) | 0.7000 | 0.8900 | 0.0300 | 0.0200 | 1.6400 | 1.5800 | 0.0039 | 1.6439 | 1.6439 | 0.2124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 (C-e) | 0.7000 | 0.9700 | 0.0300 | 0.0200 | 1.7200 | 1.1600 | 0.0043 | 1.7243 | 1.7243 | 0.2110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 (C-F) | 0.7000 | 0.0600 | 0.0300 | 0.0200 | 0.8100 | - | 0.0049 | 0.8149 | 0.8149 | 0.2115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| 0.7000 | 0.0000 | 0.0300 | 0.0200 | 0.7500 | - | 0.0049 | 0.7549 | 0.7549 | 0.2115 |
| 수수료선취-온라인 (A-e) | 0.7000 | 0.3500 | 0.0300 | 0.0200 | 1.1000 | 0.9800 | 0.0032 | 1.1032 | 1.1032 | 0.2139 |
|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 (S) | 0.7000 | 0.3500 | 0.0300 | 0.0200 | 1.1000 | - | 0.0000 | 1.1000 | 1.1000 | 0.2313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 (C-P) | 0.7000 | 0.9000 | 0.0300 | 0.0200 | 1.6500 | - | 0.0000 | 1.6500 | 1.6500 | 0.2092 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 (AG) | 0.7000 | 0.7300 | 0.0300 | 0.0200 | 1.4800 | - | 0.0049 | 1.4849 | 1.4849 | 0.2115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 (C-Pe) | 0.7000 | 0.4500 | 0.0300 | 0.0200 | 1.2000 | - | 0.0000 | 1.2000 | 1.2000 | 0.2033 |
| 지급시기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- | 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사유발생시 |

<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>

(단위 : 천원)

| 클래스 (종류) | 투자기간 | 1년후 | 2년후 | 3년후 | 5년후 | 10년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 (A1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275 | 460 | 654 | 1,072 | 2,313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275 | 460 | 654 | 1,072 | 2,313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1,C2,C3,C4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231 | 457 | 653 | 1,053 | 2,242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231 | 457 | 653 | 1,053 | 2,242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 (C-e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77 | 362 | 557 | 977 | 2,223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77 | 362 | 557 | 977 | 2,223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 (C-F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84 | 171 | 263 | 461 | 1,050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84 | 171 | 263 | 461 | 1,050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77 | 159 | 244 | 427 | 973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77 | 159 | 244 | 427 | 973 |
| 수수료선취-온라인 (A-e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62 | 280 | 404 | 672 | 1,465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62 | 280 | 404 | 672 | 1,465 |
|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 (S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13 | 231 | 355 | 623 | 1,418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13 | 231 | 355 | 623 | 1,418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69 | 347 | 533 | 935 | 2,127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69 | 347 | 533 | 935 | 2,127 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 (AG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225 | 383 | 549 | 906 | 1,968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225 | 383 | 549 | 906 | 1,968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 (C-Pe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23 | 252 | 388 | 680 | 1,547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23 | 252 | 388 | 680 | 1,547 |

[변경후1]

1)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| 클래스 (종류) | 가입자격 | 구분 | 부과비율 (또는 부과금액) | 부과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 (A1) | 가입제한 없음 (선취판매수수료 징구) | 선취판매수수료 | 납입금액의 1.0% 이내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1) | 가입제한 없음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2) | Class C1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3) | Class C2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4) | Class C3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투자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 (C-e) |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 (C-F) | 주 4) 참조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|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선취-온라인 (A-e) |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(선취판매수수료 징구) | 선취판매수수료 | 납입금액의 0.5% 이내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 (S)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합니다.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.15% 이내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| 가입한 자 (후취판매수수료 징구) | | |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 (C-P) |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(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)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 (AG) |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(선취판매수수료 징구) | 선취판매수수료 | 납입금액의 0.75% 이내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 (C-Pe) |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(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) | 선취판매수수료 | -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-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-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2(퇴직연금))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=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=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 | 판매회사의 전자매체(온라인)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=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=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(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) | 선취판매수수료 | =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=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2(퇴직연금))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| 선취판매수수료 | = | 매입시 |
| | | 후취판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| | | 전환수수료 | = | 전환시 |
| | | 환매수수료 | = | 환매시 |

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| 클래스 | 지급비율 (연간, %)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집합투자업자 보수 | 판매회사 보수 | 신탁업자 보수 |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| 총보수 | 동종유형총보수 | 기타비용 | 총보수·비용 | 합성총보수·비용 (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) | 증권거래비용 |
| 수수료선취-오프 | 0.7000 | 0.9800 | 0.0300 | 0.0200 | 1.7300 | 1.3700 | 0.0049 | 1.7349 | 1.7349 | 0.2115 |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라인 (A1) | | | | | | | | | |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1) | 0.7000 | 1.5000 | 0.0300 | 0.0200 | 2.2500 | 1.5800 | 0.0032 | 2.2532 | 2.2532 | 0.2562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2) | 0.7000 | 1.3500 | 0.0300 | 0.0200 | 2.1000 | 1.5800 | 0.0000 | 2.1000 | 2.1000 | 0.2130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3) | 0.7000 | 0.9900 | 0.0300 | 0.0200 | 1.7400 | 1.5800 | 0.0000 | 1.7400 | 1.7400 | 0.2233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 (C4) | 0.7000 | 0.8900 | 0.0300 | 0.0200 | 1.6400 | 1.5800 | 0.0039 | 1.6439 | 1.6439 | 0.2124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 (C-e) | 0.7000 | 0.9700 | 0.0300 | 0.0200 | 1.7200 | 1.1600 | 0.0043 | 1.7243 | 1.7243 | 0.2110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 (C-F) | 0.7000 | 0.0600 | 0.0300 | 0.0200 | 0.8100 | - | 0.0049 | 0.8149 | 0.8149 | 0.2115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 (C-W) | 0.7000 | 0.0000 | 0.0300 | 0.0200 | 0.7500 | - | 0.0049 | 0.7549 | 0.7549 | 0.2115 |
| 수수료선취-온라인 (A-e) | 0.7000 | 0.3500 | 0.0300 | 0.0200 | 1.1000 | 0.9800 | 0.0032 | 1.1032 | 1.1032 | 0.2139 |
|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 (S) | 0.7000 | 0.3500 | 0.0300 | 0.0200 | 1.1000 | - | 0.0000 | 1.1000 | 1.1000 | 0.2313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 (C-P) | 0.7000 | 0.9000 | 0.0300 | 0.0200 | 1.6500 | - | 0.0000 | 1.6500 | 1.6500 | 0.2092 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 (AG) | 0.7000 | 0.7300 | 0.0300 | 0.0200 | 1.4800 | - | 0.0049 | 1.4849 | 1.4849 | 0.2115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 (C-Pe) | 0.7000 | 0.4500 | 0.0300 | 0.0200 | 1.2000 | - | 0.0000 | 1.2000 | 1.2000 | 0.2033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 (C-P2(퇴직연금)) | <u>0.7000</u> | <u>0.8200</u> | <u>0.0300</u> | <u>0.0200</u> | <u>1.5700</u> | - | - | <u>1.5700</u> | <u>1.5700</u> | -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 (C-P2e(퇴직연금)) | <u>0.7000</u> | <u>0.4100</u> | <u>0.0300</u> | <u>0.0200</u> | <u>1.1600</u> | - | - | <u>1.1600</u> | <u>1.1600</u> | -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| <u>0.7000</u> | <u>0.2700</u> | <u>0.0300</u> | <u>0.0200</u> | <u>1.0200</u> | - | - | <u>1.0200</u> | <u>1.0200</u> | -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2(퇴직연금)) | <u>0.7000</u> | <u>0.2600</u> | <u>0.0300</u> | <u>0.0200</u> | <u>1.0100</u> | - | - | <u>1.0100</u> | <u>1.0100</u> | - |
| 지급시기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- | 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매3개월/사유발생시 | 사유발생시 |

<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>

(단위 : 천원)

| 클래스 (종류) | 투자기간 | 1년후 | 2년후 | 3년후 | 5년후 | 10년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 (A1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275 | 460 | 654 | 1,072 | 2,313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275 | 460 | 654 | 1,072 | 2,313 |
| 수수료미징구-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231 | 457 | 653 | 1,053 | 2,242 |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오프라인-보수체감 (C1,C2,C3,C4)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231 | 457 | 653 | 1,053 | 2,242 |
|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 (C-e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77 | 362 | 557 | 977 | 2,223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77 | 362 | 557 | 977 | 2,223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기관 (C-F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84 | 171 | 263 | 461 | 1,050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84 | 171 | 263 | 461 | 1,050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랩 (C-W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77 | 159 | 244 | 427 | 973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77 | 159 | 244 | 427 | 973 |
| 수수료선취-온라인 (A-e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62 | 280 | 404 | 672 | 1,465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62 | 280 | 404 | 672 | 1,465 |
|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 (S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13 | 231 | 355 | 623 | 1,418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13 | 231 | 355 | 623 | 1,418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개인연금(C-P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69 | 347 | 533 | 935 | 2,127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69 | 347 | 533 | 935 | 2,127 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 권유저비용 (AG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225 | 383 | 549 | 906 | 1,968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225 | 383 | 549 | 906 | 1,968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 인연금 (C-Pe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23 | 252 | 388 | 680 | 1,547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23 | 252 | 388 | 680 | 1,547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퇴직연금(C-P2(퇴직연 금)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61 | 330 | 507 | 889 | 2,024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61 | 330 | 507 | 889 | 2,024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 직연금(C-P2e(퇴직연금)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19 | 244 | 375 | 657 | 1,495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19 | 244 | 375 | 657 | 1,495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 -개인연금(S-P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05 | 214 | 330 | 578 | 1,315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05 | 214 | 330 | 578 | 1,315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 -퇴직연금(S-P2(퇴직연 금)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104 | 212 | 326 | 572 | 1,302 |
| |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·비용 | 104 | 212 | 326 | 572 | 1,302 |

[변경전2]

※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Class C-P 및 Class C-Pe 가입자에 한함)

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|--|
| 납입요건 |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 |
| 수령요건 |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 |
| 세액공제 | 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|

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| <p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p> <p>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p> <p>[세액공제]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|
| 연금수령시 과세 | 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 |
| 분리과세한도 | 1,200 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 |
|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재지변 •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•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|
|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| 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 |
| 연금외 수령시 과세 | 기타소득세 16.5% |
| 해지가산세 | 없음 |
| 연금계좌 승계 | 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 |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※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구분 | '13.3.1 전 가입자 |
|-------|---|
| 해지가산세 | <p>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.2%</p> <p>[면제사유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재지변 • 저축자의 사망, 퇴직, 해외이주, 폐업 •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|

주 1)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후2]

※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(Class C-P, Class C-Pe 및 Class S-P 가입자에 한함)
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|
| 납입요건 |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 |
| 수령요건 |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 |
| 세액공제 | <p>[납입금액]</p> <p>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p> <p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p> <p>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p> <p>[세액공제]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|
| 연금수령시 과세 | 연금소득세 5.5 ~ 3.3% (나이에 따라 변경) |
| 분리과세한도 | 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 |
|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재지변 •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•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|
|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| 연금소득으로 3.3 ~ 5.5%(분리과세) |
| 연금외 수령시 과세 | 기타소득세 16.5% |
| 해지가산세 | 없음 |

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연금계좌 승계 | 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
-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- ※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구분 | '13.3.1 전 가입자 |
|-------|---|
| 해지가산세 |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.2% |
| | [면제사유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재지변 • 저축자의 사망, 퇴직, 해외이주, 폐업 •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•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|

- 주 1)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Class C-P2(퇴직연금), C-P2e(퇴직연금), Class S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 가입자

-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
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

-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 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♣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(<http://pension.fss.or.kr>)의 “과세제도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